

# 창 원 지 방 법 원

##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4타경112298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1. 26.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민병일	전자서명완료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3.07.19.자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4. 12. 3.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 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 분	점유의 권 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 증 금	차 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박다경	전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임차인	2021.10.21~	1억4000만원	없음	2021.10.22	2021.09.23		
	전부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2021.10.21~	1억4000만원	없음	2021.10.22	2021.09.23		
<b>&lt;비고&gt;</b> 박다경: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3.18. 박다경에게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2026.1.2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제출됨. (2026. 1. 26.자 정정)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장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부동산의 표시

2024타경112298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215-18  
창원1차비룡벨로스텔라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0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지하1층 217.95㎡

- 1층 104.05㎡
- 2층 350.2545㎡
- 3층 350.2545㎡
- 4층 350.2545㎡
- 5층 350.2545㎡
- 6층 350.2545㎡
- 7층 350.2545㎡
- 8층 350.2545㎡
- 9층 350.2545㎡
- 10층 350.2545㎡
- 11층 350.2545㎡
- 12층 350.2545㎡
- 13층 350.2545㎡
- 14층 350.25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1층 11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8.765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215-18  
1078㎡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078분의 15.92731

감정평가액 144,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2.26	144,000,000	14,400,000
2회	2026.04.02	100,800,000	10,080,000
3회	2026.05.07	70,560,000	7,056,000
4회	2026.06.04	49,392,000	4,939,200

---

2026.1.2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2026. 1. 26.자 정정)

---